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 두는 정원 중 1명을 국무조정실 5급 1명에서 경찰청 경감 1명으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의 외신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4·5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별 업무 추진체계 정립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문화원의 사업과 조직을 흡수·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21.9.24. 시행)됨에 따라, 당초 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공공성과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전당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전당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7항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서 관련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제29조제2항 중 “총무과·기획총괄과·사서교육문화과”를 “운영지원과·기획총괄과·도서관인재개발과”로,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사서교육문화과장”을 “도서관인재개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서교육문화과장”을 “도서관인재개발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전시업무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 문화행사 및 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30조의 제목 “(자료관리부)”를 “(지식정보관리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료관리부장”을 “지식정보관리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료관리부에 자료수집과·국가서지과·자료운영과”를 “지식정보관리부에 장서개발과·온라인자료과·국가서지과”로, “자료수집과장”을 “장서개발과장”으로, “국가서지과장·자료운영과장”을 “온라인자료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국가서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료수집과장”을 “장서개발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장서개발계획”을 “장서개발정책”으로, “시행”을 “총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수집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0조제3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시행”을 “총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등록·수집”을 “수집·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내 도서관자료의 납본, 보상, 자료조사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

9. 장서개발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 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

13. 국가장서개발 관련 국내외 협력

14. 서고 자료 운영 및 관리

제30조제4항 중 “국가서지과장”을 “온라인자료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중전의 제1호) 및 제10호(중전의 제2호) 중 “도서관자료”를 각각 “온라인 자료”로, 같은 항 제10호(중전의 제2호) 중 “표준화”를 “표준화 계획 수립”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온라인 자료 수집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온라인 자료(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의 납본, 보상, 자료조사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자료(납본 대상 자료를 제외한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기증·등록·보존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 자료 등록·수집 관련 통계 관리
5. 한국 관련 해외자료 디지털화 수집·등록에 관한 사항
6. 신매체 유형의 도서관자료 조사·수집에 관한 사항
7. 온라인 자료 등록원부의 관리
8. 온라인 자료 수집 관련 국내외 협력

제3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료운영과장”을 “국가서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

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서관자료(이하 이 항에서 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제3호는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의 분류·목록·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등 표준화 계획 수립 및 시행
3. 국가 서지 표준화 총괄
4. 국가 서지의 발간 및 보급
5. 신착도서 표지·목차 정보의 구축·제공
6. 도서관자료 등록원부의 관리
7. 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 및 운영
8. 국제표준도서번호제도·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제도 및 국제표준 이름식별기호제도의 운영
9. 연속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성

제30조제5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근대자료 수집·등록·이용·해제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제30조의2의 제목 “(디지털자료운영부)”를 “(지식정보운영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을 “지식정보운영부장”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식정보운영부에 디지털정보기획과·지식정보서비스과 및 정보기술기반과를 두되, 디지털정보기획과장·지식정보서비스과장은 서기관으로, 정보기술기반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지털기획과장”을 “디지털정보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디지털도서관”을 “도서관 디지털 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제9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서관 데이터 발굴 및 신기술 융합 서비스 추진전략 수립·시행
9. 도서관 디지털화 자료의 개방, 공유에 관한 사항
8. 차세대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연구·실험 및 개발

제30조의2제3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10호로 한다.

제3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지털정보이용과장”을 “지식정보서비스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디지털도서관 이용서비스”를 “지식정보서비스과 소관 정보이용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2호) 중 “디지털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디지털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중전의 제6호) 중

“디지털도서관 온라인자료의”를 “소장자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디지털도서관 정보활용능력”을 “도서관 이용자 교육”으로 한다.

2. 지식정보서비스과 소관 자료실 및 이용자 열람 공간 운영 및 관리
3.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보급
6.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서 추천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

제30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시스템운영과장”을 “정보기술 기반과장”으로 한다.

제33조의2제4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책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정책정보 공유기관 협력망의 운영

제45조의2제1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제1항에 따른 전당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

규정에 표시한다.

제47조제8항 본문 중 “3명(행정주사)”를 “4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로 한다.

제49조의2제6항 중 “중 1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은 국무조정실,”을 “중”으로, “국방부”를 “국방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 계 및 일반직 계 “58”을 각각 “59”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2”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8”을 각각 “59”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2”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2”를 각각 “13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30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전당장) 1”를 신설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전당장) 1 다음에 “고위공무원단 1”를 신설하고, “임기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가급) 1”를 삭제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1”을 “128”로 한다.

별표 16의2 중 일반직 계 “9”를 “8”로 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2”를 “1”로 하며, 학예연구사 1 다음에 “경찰공무원 계 1”를 신설하고, 경찰공무원 계 1 다음에 “경감 1”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⑯ (생략) <17>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 12. (생략)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⑯ (현행과 같음) ----- -----. 1. ~ 5. (현행과 같음) 6. <u>사서 관련 자격제도에 관한</u> <u>사항</u> 7. ~ 13. (현행 제6호부터 제12 호까지와 같음)
제29조(기획연수부) ① (생략) ② 기획연수부에 <u>총무과 · 기획</u> <u>총괄과 · 사서교육문화과</u> 및 국 제교류홍보팀을 두되, <u>총무과장</u> 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총괄과장 및 <u>사서교육문화</u> <u>과장</u> 은 서기관으로, 국제교류홍 보팀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 관으로 보한다. ③ <u>총무과장</u> 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 9. (생략)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9조(기획연수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u>운영지원과 ·</u> <u>기획총괄과 · 도서관인재개발과</u> ----- <u>운영지</u> <u>원과장</u> ----- ----- <u>도서관인재</u> <u>개발과장</u> ----- ----- -----. ③ <u>운영지원과장</u> ----- -----. 1. ~ 9. (현행과 같음) ④ ----- -----.

1. ~ 4. (생략) <u>5. 전시업무에 관한 사항</u> 6. · 7. (생략) ⑤ <u>사서교육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4. (생략) <u>5. 도서관 문화행사 및 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u> <u>6. 사서자격증 발급 및 사후관리</u> ⑥ <u>국제교류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9. (생략) <u>10. 도서관 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u> <u><신설></u> <u><신설></u> 제30조(자료관리부) ① <u>자료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② <u>자료관리부에 자료수집과 ·</u>	1. ~ 4. (현행과 같음) <u><삭제></u> 6. · 7. (현행과 같음) ⑤ <u>도서관인재개발과장-----</u> -----. 1. ~ 4.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⑥ ----- -----. 1. ~ 9. (현행과 같음) <u><삭제></u> <u>11. 전시업무에 관한 사항</u> <u>12. 도서관 문화행사 및 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u> 제30조(지식정보관리부) ① <u>지식정보관리부장-----</u> ----- ----- -----. ② <u>지식정보관리부에 장서개발</u>
--	---

국가서지과·자료운영과 및 고문헌과를 두되, 자료수집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가서지과장·자료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고문헌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자료수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 설>

2. 납본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 설>

3. 국내 도서관자료(온라인자료는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대상이 되는 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본, 보상, 자료조사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

4.·5. (생략)

과·온라인자료과·국가서지과

----- 장서개발과장-----

----- 온

라인자료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국가서지과장-----

---.

③ 장서개발과장-----

-----.

1. 장서개발정책----- 총괄

2.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수집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 총괄

4. 국내 도서관자료의 납본, 보상, 자료조사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6. 도서관자료 <u>등록·수집</u> 관련 통계 관리 7. (생략) 8. <u>외국자료 선정위원회 운영관 리에 관한 사항</u> <u><신설></u> 10.·11.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13. (생략) ④ <u>국가서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신설></u> <u><신설></u> 1. <u>도서관자료의 분류·목록· 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u> 2. <u>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u>	같음) 7. ----- <u>수집·등록</u> ----- ----- 8. (현행 제7호와 같음) <u><삭제></u> 9. <u>장서개발위원회 운영·관리 에 관한 사항</u> 10.·11. (현행과 같음) 12. <u>도서관 자료의 교류 및 상호 교환</u> 13. <u>국가장서개발 관련 국내외 협력</u> 14. <u>서고 자료 운영 및 관리</u> 15. (현행 제13호와 같음) ④ <u>온라인자료과장</u>----- -----. 1. <u>온라인 자료 수집계획의 수 립 및 시행</u> 2. <u>온라인 자료(국제표준자료번 호를 부여받은 자료)의 납본, 보상, 자료조사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u> 9. <u>온라인 자료</u>----- -- 10. <u>온라인 자료</u>-----
---	---

誌) 등 <u>표준화</u> 및 시행	-- <u>표준화 계획 수립</u> ----- -----
3. <u>출판예정도서목록제도의 운영</u>	3. <u>온라인 자료(납본 대상 자료를 제외한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기증·등록·보존 등에 관한 사항</u>
4. <u>국가 서지의 발간 및 보급</u>	4. <u>온라인 자료 등록·수집 관련 통계 관리</u>
5. <u>신착도서 표지·목차 정보의 구축·제공</u>	5. <u>한국 관련 해외자료 디지털화 수집·등록에 관한 사항</u>
6. <u>도서관자료 등록원부의 관리</u>	6. <u>신매체 유형의 도서관자료 조사·수집에 관한 사항</u>
7. <u>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 및 운영</u>	7. <u>온라인 자료 등록원부의 관리</u>
8. <u>국제표준도서번호제도·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제도 및 국제표준이름식별기호제도의 운영</u>	8. <u>온라인 자료 수집 관련 국내외 협력</u>
9. <u>연속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성</u>	<삭 제>
⑤ <u>자료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⑤ <u>국가서지과장</u> ----- -----.
1. <u>자료운영과 소속의 자료실 운영 및 관리</u>	1. <u>도서관자료(이하 이 항에서 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제3호는 온라인 자료를 포</u>

<u><신 설></u> 3. <u>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보급</u> <u><신 설></u> <u><신 설></u> 6. <u>자료운영과 소관 자료이용서비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u> <u><신 설></u> 8. <u>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u> 9. <u>사서 추천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u> 10. <u>도서자료 이용자 연구 및 이용서비스 평가</u> 11. <u>근대문학자료 관리 및 이용서비스에 관한 사항</u> ⑥ 고문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함한다.)의 분류·목록·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u> 2. <u>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등 표준화 계획 수립 및 시행</u> 3. <u>국가 서지 표준화 총괄</u> 4. <u>국가 서지의 발간 및 보급</u> 5. <u>신착도서 표지·목차 정보의 구축·제공</u> 6. <u>도서관자료 등록원부의 관리</u> 7. <u>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 및 운영</u> 8. <u>국제표준도서번호제도·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제도 및 국제표준이름식별기호제도의 운영</u> 9. <u>연속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성</u> <u><삭 제></u> <u><삭 제></u> ⑥ ----- -----.
---	---

1. ~ 6. (생략)

<신설>

제30조의2(디지털자료운영부) ①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디지털자료운영부에 디지털기획과·디지털정보이용과 및 정보시스템운영과를 두되, 디지털기획과장은 서기관으로, 디지털정보이용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시스템운영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디지털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2.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대상이 아닌 온라인자료의 수집 및 보존
3. 제2호에 따라 수집된 온라인 자료의 등록·정리 및 통계

1. ~ 6. (현행과 같음)

7. 근대자료 수집·등록·이용·해제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제30조의2(지식정보운영부) ① 지식정보운영부장-----

-----.

② 지식정보운영부에 디지털정보기획과·지식정보서비스과 및 정보기술기반과를 두되, 디지털정보기획과장·지식정보서비스과장은 서기관으로, 정보기술기반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디지털정보기획과장-----
-----.

1. 도서관 디지털서비스 -----
--

<삭제>

<삭제>

등에 관한 업무

<신 설>

<신 설>

6. ~ 11. (생 략)

<신 설>

12. 정책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3. 정책정보 공유기관 협력망
의 운영

14. (생 략)

④ 디지털정보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도서관 이용서비스 기
획 및 운영

<신 설>

2. 디지털도서관 이용봉사제도
의 개발·보급

<신 설>

7. 도서관 데이터 발굴 및 신기
술 융합 서비스 추진전략 수
립·시행

9. 도서관 디지털화 자료의 개
방, 공유에 관한 사항

2. ~ 6. (현행 제6호부터 제11
호까지와 같음)

8. 차세대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연구·실험 및 개발

<삭 제>

<삭 제>

10. (현행 제14호와 같음)

④ 지식정보서비스과장-----
-----.

1. 지식정보서비스과 소관 정보
이용서비스 -----

2. 지식정보서비스과 소관 자료
실 및 이용자 열람 공간 운영
및 관리

5. 도서관 -----
--

6.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 서

<신 설>

4.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연구 및 이용서비스 평가

5.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열람 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6. 디지털도서관 온라인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7. 디지털도서관 비도서 서고자료 운영 및 관리

8. 디지털도서관 정보활용능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생 략)

⑤ 정보시스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제33조의2(국립세종도서관) ① ~ ③ (생 략)

④ 정책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보급

4. 도서관 -----

<삭 제>

9. 소장자료 -----
--

7. 사서 추천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이용자 교육 -----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⑤ 정보기술기반과장-----
-----.

1. ~ 10.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국립세종도서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4. (현행과 같음)

5. 정책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정책정보 공유기관 협력망의 운영

5. · 6. (생략) 8. ~ 11. (생략) ⑤ (생략) 제45조의2(전당장)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전당장 1명을 두되, 전당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생략) <신설>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⑦ (생략) ⑧ 해외문화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고, 별표 6의 정원 중 3명(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7. · 8.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9. ~ 12. (현행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전당장) ①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제1항에 따른 전당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4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
--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⑨ ~ ⑮ (생략)

제49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① ~ ⑤ (생략)

⑥ 별표 16의2의 정원 중 1명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은 국무조정실, 1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은 국

정주사 -----

---. -----

---.

⑨ ~ ⑮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중 -----

----- 국

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
원해야 한다.

방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58		59	+1	
일반직	계	·	·	·	·		
			58		59	+1	
		·	·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2	+1	
		·	·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58</u>		<u>59</u>	+1	
일반직 계			<u>58</u>		<u>59</u>	+1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1</u>		<u>2</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7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32</u>	<u>122</u>	+90
일반직 계	<u>32</u>	<u>122</u>	+9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전당장)	<신 설>	<u>1</u>	+1
고위공무원단	<신 설>	<u>1</u>	+1
임 기 제	<u>1</u>	<삭 제>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가급)			
3급 또는 4급 이하	<u>31</u>	<u>120</u>	+89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의2]

문화체육관광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9조의2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일반직 계	· · <u>9</u>	· · <u>8</u>	-1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 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 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 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 · <u>2</u>	· · <u>1</u>	-1
· · 경찰공무원 계	· · <신 설>	· · <u>1</u>	+1
<u>경감</u>	<u><신 설></u>	<u>1</u>	+1